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불굴의떡볶이 정보공개서

(유)에브라임이노베이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유)에브라임이노베이션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 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길 23, 3층

전화 : 1599-2019

팩스 : 02-3446-713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6248-560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유)에브라임 이노베이션	불굴의떡볶이 외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길 23, 3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1.04.23	2009.09.09	권순문	02-6248-5600	02-3446-7135
	법인등록번호	110114-0119633	사업자등록번호	110-81-5114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권순문/ 유한회사 에브라임 이노베이션	불굴의떡볶이 외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길23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순문	02-3446-7132	02-3446-7135
이사	이은숙/ 유한회사 에브라임 이노베이션	불굴의떡볶이 외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길23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순문	02-3446-7132	02-3446-713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불굴의떡볶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불굴의떡볶이	
상 호	불굴의떡볶이 OO점	
상표(서비스표)	불굴의 떡볶이	서비스표 출원번호 : 제 40-2020-0171873
		서비스표 출원번호 : 제 40-2020-0188585
		서비스표 출원번호 : 제 40-2021-0088020
광 고	해당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없음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53,982,589	24,053,650	29,928,938	18,463,164	1,003,099	1,043,999
2022년	56,085,697	26,643,532	29,442,165	20,295,472	1,179,898	-446,749
2023년	56,511,576	26,556,826	29,954,750	16,674,944	1,209,790	662,977

그 근거자료는 [별첨3]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당사는 본 가맹사업(불굴의떡볶이) 외, 가맹사업(카페게이트, 할리데이피자, 청춘식당, 와일드주스랩)과 패션(미그웨이), 건물관리 및 임대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권순문	대표이사	1998년~2001년	본부장	이랜드 식품사업부 경영자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1998년~2008년	대표이사	이랜드건설 법인대표
			1998년~2008년	대표이사	이랜드레저비스 법인대표
			2003년~2008년	M&A 총책임자	이랜드그룹 M&A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이은숙	이사	2013년~2014년	대표이사	(유)에브라임이노베이션 법인대표

			2013년~2014년	대표이사	(주)에브리타임개발 법인대표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1	5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유)에브리타임 이노베이션	가맹사업 경영	2015.07. ~ 현재	카페게이트 (등록번호:20150253)라는 영업표지의 커피사업 경영
가맹본부	(유)에브리타임 이노베이션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시작 예정임	할리데이피자 (등록번호:20201885)라는 영업표지의 피자사업 경영
가맹본부	(유)에브리타임 이노베이션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시작 예정임	청춘식당 (등록번호:20201886)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유)에브리타임 이노베이션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시작 예정임	와일드주스랩 (등록번호:20201887)라는 영업표지의 음료(커피외)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불굴의 떡볶이	영업 목적 사용 등	출원일자 : 2020.09.25	출원번호 : 제 40-2020-0171873	(유)에브라임 이노베이션	출원중
	영업 목적 사용 등	출원일자 : 2020.10.23.	출원번호: 제 40-2020-0188585	(유)에브라임 이노베이션	출원중
	영업 목적 사용 등	출원일자 : 2021.04.28.	출원번호: 제 40-2021-0088020	(유)에브라임 이노베이션	출원중

출원중인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불굴의떡볶이] 가맹사업 현황

1. [불굴의떡볶이]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1.04.09.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0.10.29.

2. [불굴의떡볶이] 연혁

불굴의떡볶이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유)에브라임 이노베이션	불굴의떡볶이	권순문	2021.04.09 ~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길 23, 3층

3. [불굴의떡볶이] 업종

영업표지	업종	
불굴의떡볶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분식	떡볶이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불굴의떡볶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	7	1	4	3	1	2	-	2
서울	3	2	1	1	0	1	2	-	2
부산	1	1	-	1	1	-	-	-	-
대구	1	1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1	1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1	1	-	1	1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1	1	-	1	1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불굴의떡볶이] 가맹점 수

해당없음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0	10	-	3	-	7
2022	7	0	0	4	0	3
2023	3	0	0	3	0	0

6. [불굴의떡볶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불굴의떡볶이]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 / 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유)에브라임이 노베이션	카페게이트	20150253	커피	115/2	130/2	152/4
가맹본부	(유)에브라임이 노베이션	할리데이피자	20201885	피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가맹본부	(유)에브라임이 노베이션	청춘식당	20201886	한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가맹본부	(유)에브라임이 노베이션	와일드주스랩	20201887	음료(커피 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불굴의떡볶이]는 23.12.31 기준 운영중인 매장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8. [불굴의떡볶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불굴의떡볶이] 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0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정보

해당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3.01~23.12	7,307	7,307	-	
광고		23.01~23.12	7,307	7,307	-	
판촉		23.01~23.12	0	0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하나은행	e-금융사업부	서울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타워1	02-3788-5475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불굴의떡볶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외장공사 및 내부옵션공사, 별도공사 등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포함내역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8,800				
가맹비	5,500	가맹점 운영권에 대한 대가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가맹계약서 제16조의 사유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개점 전 교육비	3,300	운영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소양교육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계약이행보증금의 세부사항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해지 및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합계	10,800
가맹비	5,500
개점 전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없음)	2,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39.6㎡(10평),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33,000		- 착수금 50% (착공 3일 전)		
인테리어	가맹본부 또는 공급업체 (미지정)	16,500	1,650	- 중도금 40% (착공 후 7일 이내)	공사 전	3.3㎡ 추가 시 1,650천원 추가

설비	가맹본부 또는 공급업체 (미지정)	11,000		- 잔금 10% (설비입고일)	설치 전	
간판 및 사인물	가맹본부 또는 공급업체 (미지정)	3,300			공사 전	
집기 및 비품	가맹본부 또는 공급업체 (미지정)	2,200			주문 전	

귀하는 가맹점 인테리어 및 일부 기기장비의 시공 및 공급을 가맹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시공수준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위 1-4)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개설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귀하의 실제 지불 금액은 지역별 현장 상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 실측 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추가 공사 또는 설비 비용은 1-4) 표의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가공사: 철거, 소방설비, 도시가스, 냉/난방기, 전기증설, 화장실, 내외 창호 변경, 주방설비 변경 및 상향, 추가 간판, 어닝, 가구 추가, 외부테라스, 외부실사시트, 건물기반공사, 덕트공사, 특수방수, CCTV설치, 포스, 매장 외 배관공사, 인허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선정한 업체가 가맹본부를 대신하여 인테리어를 시공할 경우, 아래 표의 감리비, 실사 및 매뉴얼/도면 제공 비용을 착공 개시 전까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준:39.6㎡(10평),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감리비	가맹본부	1,650	착공 전	착공 전	*3.3㎡당 165천원 추가 부담 *가맹사업자가 자체 인테리어 공사 진행하는 경우 적용
실사 및 매뉴얼/도면 제공비	가맹본부	2,200	착공 전	소멸성	매장 실사 및 매뉴얼 제공 / 도면작성 비용
총계	가맹본부	3,850			

※ 가맹점 개설 지역에 따라 지방경비가 추가되며, 요율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입지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나, 입지 선정에 대한 의무는 없으며 입지 선정과 관련된 최종적인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에서 승인한 입지에 대해 매출, 수익 또는 영업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즉, 입지 선정의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인 귀하 자신이며, 예상 매출을 감안한 임차료의 적정성 및 해당 입지의 법적/구조적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	------

가맹점사업자	1)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3)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4)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	---

※ 당사는 입지선정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점포의 임차 또는 보유가 가능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을것 건강진단결과서 취득 가능한 자
종업원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	만19세 이상일 것 건강진단결과서 취득 가능한 자

※ 가맹점사업자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문제점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맹개설이 불가할 경우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가맹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불굴의떡볶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 또는 공급업체의 사정에 따라 공급업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가맹금 등 분납 제도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로열티	가맹본부	550	익월 10일	반환될 수 없음	계속가맹금
광고비	가맹본부	월 순매출의 1% 등	익월 10일	반환될 수 없음	계속가맹금

판촉비	가맹본부	가맹계약서 제28조에서 정해진 금액	판촉활동 시행 30일 전	판촉활동이 취소된 경우	판촉활동 시행 후 반환불가
필수품목비 (가맹계약서 제29조 1항)	가맹본부 또는 공급업체	별도 공지	익월 10일	제품 불량	사용 후 반환불가
점포환경개선비 (가맹계약서 제13조 8항)	가맹본부 또는 공급업체	가맹본부의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환경 개선공사 개시 7일전	개선공사 개시 7일전 계약취소	개선공사 개시 후 반환불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또는 공급업체	실비	간판변경 공사 개시 7일전	간판제작 개시 전 계약취소	간판제작 등 개시 후 반환불가
기기 장비, 의탁자 교체 보수 비용	가맹본부 또는 공급업체	실비	교체/보수 개시 7일전	교체/보수 개시 7일전 계약취소	관련 작업 개시 후 반환불가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8%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	원본채권 불성립시	원본채권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한다)하기 위해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의 비용은 없으나, 가맹계약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시 조치 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 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에 의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불굴의떡볶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희망일 30일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를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양수도 가맹비	5,500	계약일 익일까지	가맹계약서 제16조의 사유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양수도 교육비	3,300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계약이행보증금 (부가세 없음)	2,000		계약종료 시 정산 후 반환	가맹점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때에, 종료 즉시 상호, 상표, 서비스표, 간판,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가맹점 설비와 메뉴판을 철거하고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무상대여 품목 등은 가맹본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설비: 가맹점 인테리어, 주방기기, 실내외 장식물, 집기, 비

품)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시 전 항의 철거, 원상복구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철거, 원상복구 등의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사에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사는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가맹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전화번호 등록 및 안내문구, 인터넷상의 브랜드 명칭사용 등 가맹본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휴업/폐업 사실증명서'를 가맹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사 또는 가맹본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의 반품은 불가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본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해지 이후에도 가맹본사와의 가맹계약중 취득한 영업비밀, 고객 정보 등을 가맹본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해지 이후에도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불굴의떡볶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불굴의떡볶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습니다.

2) 당사가 [불굴의떡볶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용역만을 판매해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별첨1]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1] 참조	[별첨1]에 기재된 메뉴 이외에 가맹본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레시피 무단 변경도 금지됨	1차 위반 ☞ 1차 서면 시정 요구 ☞ 가맹계약 제31조 제1항 2차 위반 ☞ 물품공급 중단 ☞ 2차 서면 시정 요구 3차 위반 ☞ 가맹계약 해지 ☞ 가맹계약 제41조 제1항

귀하가 [별첨1] 표에 표시되지 않은 메뉴를 판매하려고 하거나, 위에 표시된 메뉴를 판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메뉴의 레시피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맛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 역시 매우 심각한 계약위반 사항입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첨1]에 기재된 상품(메뉴)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가맹점 운영 용도 외 타 가맹점 및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거나,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타인 및 제3자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물품	거래상대방별로 공급받는 모든 물품	1차 위반 ☞ 1차 서면 시정 요구 ☞ 가맹계약 제31조 제1항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2차 위반 ☞ 물품공급 중단 ☞ 2차 서면 시정 요구 3차 위반 ☞ 가맹계약 해지 ☞ 가맹계약 제41조 제1항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1]과 같습니다. 이러한 판매가격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에서 권장하는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없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떡볶이 전문점	불굴의떡볶이	해당없음

영업지역은 배달영업에 관련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 당사 영업지역은 다음과 같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설정기준	가맹점 간 거리기준(반경500m이내에서 영업지역으로 표시된 구역)

예외사항	1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2 기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① 상업지역으로 유동인구(하루 동안 기존 가맹점 매장 앞을 도보로 지나가는 총 인구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단, 현재 500m이내 인근가맹점이 이미 출점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출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철길 또는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 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③ 백화점, 역사, 지하상권, 아케이드, 대형쇼핑몰, 대형오피스건물, 대학교 등 특수 상권내에 출점(shop-in-shop형태)하는 경우 ④ 주거지역으로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⑤ 그 밖에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신규 출점으로 인해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출점한 가맹점으로 이용하는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설정방법	가맹점과 가맹점 간 직선거리 500m 단, 가맹점과 가맹점 간 직선거리는 가맹점이 입점된 건물 외곽 기준이 아니라 가맹점의 외곽(점포 면적의 끝)을 기준으로 잴 거리를 말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가맹본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불굴의떡볶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0	100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불굴의떡볶이]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 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가맹계약서 제40조 1항)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 공사비, 관리감독비 등 당사가 약정한 각종 가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상호간에 신의칙에 입각한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41조 1항)
1.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불법으로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제8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7. 가맹점사업자의 채무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8.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제29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을 위반하여 제29조 제1항의 상품을 자점 매입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대여할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제29조 제2항에 의거한 품질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4. 가맹점사업자가 제3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15.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가맹점사업자가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18.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19.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물류대금을 3회 이상 누적 연체할 경우
20. 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원·부재료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21.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2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3.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2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2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의 인테리어 및 외관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점포를 확장, 축소 또는 이전할 경우
2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사와 약정한 최초 및 계속가맹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할 경우
27. 가맹계약서 제40조 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41조 2항)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절차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희망일 30일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POS 매출 자료를 귀하의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의 책임으로 인·허가 사항을 이행할 것 ○ 양도전 잔존채무의 이행 완료할 것 ○ 양수인이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등 자료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및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및 신규 가맹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비용 입금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02-6248-5600)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양수인은 가맹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 시와 동일한 가맹비를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신청과 함께 가맹점의 집기, 설비, 시설물, 인테리어 등의 점검을 의뢰하고 교체·보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이행 중 귀하가 매장의 인테리어 및 시설물을 임의 개조·변형한 것이 확인될 경우, 당사는 양수도에 대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가맹점운영권의 대리행사 및 업무위탁은 불가능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			
업무위탁	불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양도일 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2년간 [불굴의떡볶이]의 영업표지, 영업방식 등을 모방하거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불굴의떡볶이]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계약 제44조) 이는 제 3자를 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비고
------------	----

떡볶이 전문점(분식점류 포함)	문의: 가맹본사 (02-6248-5600)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불굴의떡볶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상권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주6일, 월 28일 이상	3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 휴업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 휴업개시 또는 영업시간 조정 희망일 7일 전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해당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불굴의떡볶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단위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가맹계약 제27조[광고] 제3항, 제4항 제17조 [계속가맹금]의 월 순매출의 1% 우선 사용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해당없음	
판촉행사	판촉비의 50%	판촉비의 50%	가맹계약 제28조[판촉] 제4항, 제5항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하며, 광고/판촉을 위한 팜플렛, 전단, 카달로그, 쿠폰 등은 [불굴의떡볶이]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가맹본부에 의뢰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광고·판촉 비용은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당사와의 가맹계약 및 가맹점 운영을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해 계약 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종료 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귀하의 가족, 직원, 기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들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귀하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계약종료 이후 계약종료의 의무 및 조치 및 영업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당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귀하는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경우 당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이후 2년 이내에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매 건별로 위약벌 금 이천만원(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제38조 제8항 및 제44조 위반 시)

귀하가 계약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매 건별로 위약벌 금 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가맹계약 제39조 제1항 위반 시)

귀하의 계약위반에 대한 당사의 2회 이상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가맹계약 제41조 제1항 관련)

귀하가 가맹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을 일방적 폐업하거나, [불굴의떡볶이]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후 [불굴의떡볶이]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그 침해가 중단되는 날까지 1일당 금 삼십만원(300,000원)의 위약벌을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 중 매출을 누락하여 가맹본사에 입금해야 할 광고비를 실제보다 적게 입금했을 경우 [불굴의떡볶이] 평균 현금 비율 20%를 적용하여 영업개시일부터 매출 누락 발견 시점까지의 차액을 산정하여 가맹본사에 입금하여야 한다. 또한, 발견시마다 매 건별로 금 일백만원(1,000,000)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 항의 경우 귀하의 형사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의 위법 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6 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7일~14일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사업 설명·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최종 협의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1일 이상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또는 7일/	
가맹금 예치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1일 이상	
점포실측/설계	인테리어 등 공사업체 선정 점포실측/ 설계/ 공사비용 산출	3일 이상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승인	3일 이상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	20~30일 이상 (점포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초도물품 입고	유니폼, 식자재 등 입고	1일 이상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	3일 이상 (점포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맹본사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길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경우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가맹본사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	-----------------	-----------------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사항 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불굴의떡볶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불굴의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개업 및 운영교육	3일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시, 오픈 전 이수
오픈 점검	교육에 따라 다름	최초 가맹금에 포함	개점 후 운영실무 점검 및 미흡사항 최종 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는 영업개시일 2일 전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전점/클레임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귀하는 가맹계약서에 의거하여 영업개시 지연, 가맹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사는 영업개시 지연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별첨1]

상품	가격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불굴의 떡볶이	8,500	가맹본사에서 지정한 메뉴 및 가격 -원쪽에 기재된 메뉴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음.	1차 위반: ☞1차 서면 시정 요구 ☞가맹계약 제31조 제1항 2차 위반: ☞물품공급 중단 ☞2차 서면 시정 요구
로제떡볶이	9,500		
로제 누들떡볶이	9,500		
우차돌떡볶이	14,000		
통오징어떡볶이	13,000		
폭탄치즈 떡볶이	11,500		
마살라 커리떡볶이	9,000		

맛감자튀김	3,000		3차 위반: ☞가맹계약 해지 ☞가맹계약 제41조 제1항
새우튀김	2,000		
롱 오징어튀김	2,000		
바삭야채튀김	2,000		
김말이튀김	1,500		
단호박튀김	2,000		
핫도그	2,500		
순살크리스피치킨	8,900		
찰쫄순대	4,000		
모듬튀김	6,000		

[별첨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불떡클럽 연남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23길 30, 2층
2	서울	불떡클럽 홍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96, 2층
3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2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	-----------------

35,360	● 운영 POS 매출을 근거로 작성. ● 직영점 2개 중 1개매장은 23.12.31기준 영업일수가 약 60여일밖에 되지 않아 매출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	---

[별첨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599-106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